

인천광역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907
----------	-----

발의년월일 : 2009. 10. 28

발 의 자 : 박창규 의원 외 7인

1. 주 문

-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인천대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06년 2월부터 추진하였으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에 891,990.4㎡ (266,802평)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4년 6월까지 6,306세대 19,326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음.

동 사업의 목적은 첫째, 인천대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둘째, 낙후된 구도심지역을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민간자본 유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을 이유로 자본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5개월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구성인원 : 5인 이내
- 대상사업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붙임(1)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개요
- 활동방향
 -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관련기관(부서) 추진사항 및 지역주민 여론(건의사항) 수렴
 -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사례 벤치마킹
 - 개발초기부터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절차, 주민협의체 구성 등
 - 도시개발사업의 개선방안 강구 및 정책대안 제시
 - 개발방향, 개발방식, 기간, 일정 등

4. 세부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의결

5. 관련규정(붙임2)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 낙후된 구도심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구도심 활성화 도모
- ▶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 ▶ 상업, 업무, 문화, 주거의 복합기능 도시 조성

사업 개요

- 사업방식 : 민자사업 (공사 19.9%)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규 모 : 881,047㎡
- 사업기간 : 2007 ~ 2014
- 개발법적용 : 도시개발사업법
- 사 업 비 : 2조 6,188억원

【 불임2 】

관 련 규 정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